

 과천시공사	<h1>G-브리프</h1>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
	주관 부서	미래전략단	발간 일자

지방공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과제

신 지 인

<목 차>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2
.....	
2. 영국 「기업과실치사법」과 비교	4
.....	
3. 중대시민재해 대응 방향	5
.....	
4. 선제적 이행 과제 제언	7
.....	

◆ 주요 내용 ◆

- 중대재해처벌법 특징
 - (책임주체) 경영책임자 (보호 대상) ‘수급인’ 포함
 - ‘중대시민재해’ 개념 새롭게 규정
- 영국 「기업과실치사법」과 비교(처벌 판단요소)
 - (영) 조직 관리와 운영체계 적절성 여부
 - (한) 경영책임자 등 개인의 주의 의무 위반
 - ↳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부여하여 기업 전체에 관리체계 갖추는 것이 핵심
- 중대시민재해 대응 방향
 -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예방-대비-사후조치) 필요
 - 실무적 차원의 안전관리 조치 및 경영책임자 등의 경영상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선제적 이행 과제 제언
 -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련 정량화된 목표 수립
 - 도급 시의 협력업체 관리 관련 적극적인 지도점검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¹⁾,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법령 미준수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간관리자 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체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중대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단순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닌, 위험을 제대로 예방·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 범죄”

- ✓ 산업현장에서 연이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산업환경의 안전을 법과 제도로 보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옴
- ✓ 근로자의 사상에 대하여 처벌 수준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을 통해 형량을 강화하였으나, 실제 처벌 수준은 달라지지 않음
- ✓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기업 전반으로 확대 및 고위 경영진에게 직접적으로 부여하고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고안함
- ✓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ESG 경영을 추구하는 근래 변화된 사회적 인식과도 그 궤를 함께함

(출처: 최지연(2022). 중대재해처벌법의 공공부문 적용에 관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재구성.)

1)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장 등도 해당됨

○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 분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형사책임 주체	사업주(개인사업주+법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보호 대상	근로자, 수급인 근로자, 법정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	모든 사업장(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재해 정의	중대재해(산업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등	중대산업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
의무 내용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조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처벌 대상	사업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특이사항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有	‘중대시민재해’ 개념 추가

(출처: 송인택(202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박영사. 재구성.)

○ 주요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서 측정 가능하거나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수립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2

영국 「기업과실치사법」 과 비교

○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티브가 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2007년 제정)은 대형 산업재해 또는 중대 사망사고에 대해 기업의 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로, 기업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됨

○ 「중대재해처벌법」 과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주요 항목 비교

		중대재해처벌법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배경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권 확보와 중대재해 사고 방지	대형 산업 재난 예방과 기업의 안전문화 인식 제고
보호 대상		근로자와 시민	명시되지 않음
의무 주체	개인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無
	단체	법인 또는 기관	기업, 정부·자치단체, 경찰, 동업회사, 노동조합, 고용주 협회
범죄 성립 조건	재해 종류	사망 및 상해	사망
	중과실 유무	과실	중과실
일반적 의무		유해·위험 방지 의무	주의 의무
도급관계 의무		도급인 의무 = 수급인 의무	도급인 의무 ≠ 수급인 의무
처벌	개인	징역, 벌금, 공표	無
	법인	벌금, 행정제재, 공표	벌금, 구제명령, 공표명령
처벌 판단요소		개인의 주의 의무 위반	기업조직의 관리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여부

(출처: 손태홍 외(2020).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과 영국 「기업과실치사법」 의 비교 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재구성)

- ✓ 「기업과실치사법」에서는 사망 결과에 대한 경영진이나 실무자 개개인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아니라, **조직체 관리와 운영 방법의 적절성 여부**가 범죄 성립의 주요 요건임
- ⇒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자칫 처벌을 위한 법령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경영 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여 「기업과실치사법」과 같이 기업 전체에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핵심임

3

중대시민재해 대응 방향

○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도,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범주화하여 제시하고 있음
- ✓ 특히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을 새롭게 규정한 점에서 산업재해만을 다루고 있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를 보임

○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공중이용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설물안전법**」, 「**다중이용업소법**」 등에 의한 시설로서, **일정 규모·면적 이상**이거나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이나 장소를 대상으로 함

✓ 공중이용시설 유형의 규모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실내체육시설**: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공사 해당 없음)

▲ **실내공연장**: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공사 해당 없음)

⇒ 문화시설 대극장 객석 확장 리모델링 시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업무시설**: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법령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로 한정되어 있으나, 오히려 도처에 산재된 소규모 시설일수록 사고가 많이 나며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존재하므로, 규모와 관계없이 **공사 전체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재해 예방 및 대응이 필요함**

○ 중대시민재해 대응 업무 처리 절차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이용시설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 공중이용시설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보강 등 개선 ▶ 사고의 잠재성이 있는 징후나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뻔한 경미한 ‘아차’ 사고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추적 관찰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시민재해 상황별 대응 요령 매뉴얼 제작 ▶ 매뉴얼 기반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모의 대피훈련
대응, 사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출처: 신상영 외(2022). 중대시민재해 주요 이슈와 장단기 대응방향. 서울연구원. 재구성.)

○ 중대시민재해 책임 주체 및 역할 분담

책임 주체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구조·구급 등 의무위반</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형법, 시설물안전법 등에 의한 직접적인 관계자 처벌</div>	+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좌측의 업무이행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계획, 인력, 예산) 의무 위반</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div>
역할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실무적 차원의 안전관리 조치</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안전관리 여건 조성 등의 경영상의 조치</div>

- ✓ 담당자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실무적 차원의 안전관리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련 기획조정·관리·지원 시스템과 여건을 조성하는 **경영상의 조치를 했는지가 처벌의 구성요건임**
- ✓ **현장에서의 조치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를 비롯한 부서장 등 관리감독자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함

1)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련 구체적인 정량화된 목표 수립

- 기관의 안전보건 경영을 위해서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경영 실행 의지가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및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띠

“개별 기업 건은 각자 알아서 하세요“...

산업안전공단 *의* 황당한 중대재해법 설명회(조선일보, 2024. 3. 25.)

- ✓ 사업장별로 준수해야 할 수칙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목표를 계량화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객관적인 지표로 안전보건 확보 사항을 증명해야 함

2) 도급 시의 협력업체 관리 관련 적극적인 지도점검

- 공공기관에서 미흡한 부분 중 하나가 도급 시의 협력업체 관리임
-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도급자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 정도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도 점검이 필요함

- ✓ (실무자) 기관에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술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 적격 수급인 평가가 시행 중임
⇒ 올해가 시행 첫해임에 따라 임직원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안내를 통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 (관리자) 각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직접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 등을 작성하여 총괄 담당자가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참고문헌

[간행물]

- 석민애. (2024).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동향과 시사점.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IBK 경제브리프 924호
- 손태홍·최수영. (2020).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과 영국 「기업과실치사법」 의 비교 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20-20.
- 송인택. (202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박영사
- 신상영 외. (2022). 중대시민재해 주요 이슈와 장단기 대응방향.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 조동제. (2022). 지방공공기관이 산업안전보건의 선도적 모범 기관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 vol. 17 통권 37호.
- 최지연. (2022). 중대재해처벌법의 공공부문 적용에 관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2-01.

[인터넷 자료]

- 강다은. (2024. 3. 25.). “개별 기업 건은 각자 알아서 하세요“… 산업안전공단의 황당한 중대재해법 설명회. 조선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4/03/25/UVME3JO62RGLXCN4EICUAKJIGA/>

[홈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G-브리프’의 내용은
과천시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과천도시공사의 자체 분석 결과입니다.